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학생용)

<2022. 5. 학사과>

※ '코로나19'로 변경된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정리(2020. 1학기부터)

적용학기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대상자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파견 국가의 방역 정책(지역 봉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시까지 유지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 인정은 최대 18학점까 지만 가능	불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 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 원격강좌에 한해 이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수 가능하나, 사전 대면 수업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한지(대면시험 여부 등)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1. 신청 기간 및 방법

- 관련 근거: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수학신청)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신청 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 **본부 및 대학 선발:**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등록금 납부 후** 해외대학 수학
- **방문학생:** 정규학기 국외수학은 **당해 학기 "휴학" 후** 해외대학 수학

- 신청 방법

- 학생 mySNU(학생서비스>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허가신청)에서 신청
가. 본부 및 대학 교류인 경우: "학과 → 대학 → 본부" 승인

- 1) 본부 및 대학교류는 등록금을 서울대에 납부한 '등록' 상태로 해외대학 수학

- 2) **초과학기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에 국외수학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학부생 '**6학점**', 대학원생 '**3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고지서 생성되어 납부 가능

- 나. 방문인 경우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상 "학과 → 대학승인" 후 수학신청원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승인 요청(공문 접수 후 본부승인 완료)

- ※ 국제협력본부 SAP 선발자는 방문으로 수학 허가를 받아야 학점 인정 가능

- 신청 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

2. 학점인정 범위

- 관련 근거: 「서울대학교 학칙」 및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제82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1조(취득학점)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학사편입학생: 편입 이후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내역 중 최대 65학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외수학을 나가는 것은 가능하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국내·외 학점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입학생: 국내·외 수학을 통해 기인정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받지 않도록 유의

★ 유의사항

- ※ 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불가
⇒ 교육부 공식 답변

질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범위가 비학위 과정도 인정 가능한지

답변: 다른 학교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 된 경우: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WINT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불인정
- ※ **정규 학위수업이 개설**되는 SUMMER/WINTER SCHOOL(학교마다 여름/겨울계절수업을 다음과 같은 호칭으로 운영하기도 함)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가능
- 국제협력본부 SAP 프로그램으로 해외수학을 하더라도, 정규수업이 아닌 SUMMER 혹은 WINTER 프로그램을 듣고 온다면 불인정

3. 성적증명서 표기 관련 안내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 유의사항

- ※ 국문성적증명서 상에 성적 입력칸은 총 2칸으로 성적표기가 2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오니, 학점인정 서류 작성 시 성적표기에 유의 바람
→ 참고: 영문성적증명서는 성적 표기란이 총 5칸임

<국문성적증명서 예시>

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성적
일선	전략경영	1	13 .5 6/ 20
전선	경제학원론	1	pa ss

4. 학점인정 관련

- 관련 근거: 「서울대학교 학칙」 및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제74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 수업시간 외의 학습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9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객관적인 수업 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최대한의 자료(강의계획서 및 강의시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점인정 신청 요망

Q&A

Q. 초과학기생이 6학점 이상의 수업을 듣고 와도 되나요?

A. 정규학기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은 과정별로 12학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등록금은 학부생 6학점, 대학원생 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Q. 학점인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최소한 졸업·수료 예정 1개 학기 전에는 학점인정 승인을 받아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수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비학위과정이란 무엇인가요?

A. 학생이 수학하고 온 대학에서 정규 학위 수여를 위해서 개설한 교과목 외의 과정은 모두 비학위과정입니다.

예시) 어학원 수업,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수업, 하계강좌(SUMMER/WINTER SCHOOL) 등